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위촉·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위촉 근거·임기·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안 제16조)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 5. 검토의견

- 지역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의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건축디자인 품질이 저하되고 도시경관이 악화되었음. 도시경관의 창조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북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 사업에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되었음.
- 「건축기본법」 제23조<sup>6)</sup>에 따르면, 건축 관련 민원, 설계 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sup>7)</sup>는 위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 업무 범위, 보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6)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각각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당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촉 및 임기, 수당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또한, 안 제17조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위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조항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자격으로만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는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 법령에 따라 총괄·공공건축가를 위촉하도록 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함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지연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붙임: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